

■ 대학설립·운영 규정 [별표 1의2] <개정 2024. 2. 20.>

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(제2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	대학원 신설	석사과정 학과등(전공) 신설	박사과정 학과등(전공) 신설
일반대학원		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	•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•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% 이상
전문대학원	대학에 두는 전문대학 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 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 을 확보하되, 편제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 열별 학생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 으로 본다.		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
특수대학원		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	